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심사기준 고시 제정 · 공포

보건복지부는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응급환자의 응급의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대불해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심사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신청하면 응급의료기금으로 대신 지불하고 추후 환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로서, 저소득층,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처치와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모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임.

- 2002년도 대불제도의 실적은 568백만원에 그치는 등 대불제도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임. 그 이유는 첫째, 대불제도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의 연간 수입이 4~6억원에 불과하는 등 규모가 영세하여 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탓과 둘째, 홍보 부족으로 이용당사자인 의료기관의 인지도가 낮고 대불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이 불투명하여 의료기관의 불만도가 높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금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의 규모가 대폭 확충됨에 따라 다양한 기금사업의 개발과 함께 대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번 고시도 그러한 취지에서 제정 · 시행되게 되었음.

-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대불 이용자인 의료기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용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불 신청 · 심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규정하고, 대불의료비를 산정하는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제기 및 대금지급 등 사후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대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금번 고시 제정 이외에도 향후 의료기관, 119구급대, 경찰서, 시민단체 등 대불제도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에게 안내서 배포, 주요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임.

원료물질 관리체계 구축 등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

보건복지부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을 2003년 11월 17일자로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사항으로는 2002년 12월 26일 개정 · 공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 및 향정신성의약품 저장기준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과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하는 것임.

- 새롭게 개정 · 공포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과망간산칼륨 등 15종의 주요 마약류 원료물질(붙임 자료 참조)의 불법 전용 ·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 · 수입 · 수출을 하는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세부 운영절차를 정하였음.

-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난 · 분실 방지를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반면, 조제 및 취급 시 향정신성의약품이 자연적으로 파손, 박리되는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하여 종전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령에는 전월사용량의 0.2%의 범위내에서 손실율로 인정하여 선량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였음.

- 아울러 지난 7월 30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 덱스트로메토르판 " 및 " 카리소프로돌 " 제제의 시중 유통품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품포장 및 첨부문서를 교체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음.

한국-캐나다 사회정책 국제심포지움

보건복지부와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에어 캐나다가 후원하는 한국-캐나다 사회정책 국제심포지움이 2003년 11월 21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렸다.

-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캐나다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12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드니 꼬모 주한 캐나다대사가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여러 저명한 사회복지학계 인사들이 참가하였음.

- 노인복지, 가족정책, 국민연금, 건강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이번 심포지움을 통하여 특히 고령화사회에서의 주요 사회정책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음.

- 인구 고령화 과정을 한국보다 앞서 겪은 캐나다의 경험과 관련 제도는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며, 캐나다 또한 역동적인 한국의 사회정책 변화과정을 통해서 미래 사회정책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의 가능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음.

일제조사결과 저소득층 7만 5천명 신규발굴, 보호

보건복지부는 2003년 8월 4일 발표된 빈곤층 긴급보호대책의 일환으로 8 10월간 실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신청조사 " 결과 저소득층 3만 8천 가구, 7만 5천명을 각종 정부지원 대상으로 신규 보호했다고 밝혔다.

- 이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 6천 가구, 5만명으로, 이는 제도 도입이후 단기간 내

신규 발굴로는 최대실적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부적합하나 경로연금 · 보육료 지원 등 타급여 지원대상자는 1만 2천 가구, 2만 5천명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등 기초급여와 함께 노인 및 중증장애인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 장애수당 등이 지급되며, 타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경로연금 · 보육료지원 등 해당되는 개별적인 지원을 받게 됨. 아울러, 이 중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 8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급여 또는 급여 조기지급 등의 조치가 실시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 · 보호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담배가격 인상방안 확정

정부는 2003년 11월 19일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부총리, 복지 · 행자부 등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 담배가격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같이 발의하여 내년 5월경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담배가격은 갑당 500원을 인상하되, 시행시기는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인상된 500원 중 250원은 건강증진기금에, 250원은 지방세 등 세수보전 등에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30%)으로 흡연율이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인상해 나가기로 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프로그램 마련, 지역암센터 건립준비, 암 조기 검진 및 치료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외래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급여확대 실시

- 보건복지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62개 항목 중 고액 · 중증환자 진료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10개 항목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 또한 현재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월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공단이 사후 보상하고 있는 규정을 동일상병으로 6개월 간 입원한 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50%를 감면하고,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

- 항암제 투여 등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암환자의 진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외래 암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환자 수준인 20%로 경감하기로 하였음.

- 희귀 · 난치성 질환의 경우 혈우병 등 12개 질환에 대하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입원수준(20%)으로 경감하고 있으나 대상질환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환자수, 급여비 등을 감안하여 우선 62개 질환을 추가 선정하여 산정특례로 지정하기로 함.